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87 호 2023. 2. 16.(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29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3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45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65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72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
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97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울산광역시 복구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동(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를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원경찰법」에 의해”를 “「청원경찰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본청등과”를 “울산광역시 복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예산부서”라 함은”을 ““예산부서”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 경우”를 “사업완료 기간이 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를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자가 공무직을 채용할 때에는”을 “사용부서에서 공무직 채용이 필요한 경우”로, “정원”을 “정수”로 하고, “채용대상자 선정”을 “채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채용 시에는”을 “인사부서는”으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를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험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를 “서류”로 한다.

- ⑤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각 1부(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용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 또는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사용자”를 “사용부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업무 특성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채용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최근 검진 대상연도의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의3(영리업무의 겸직제한)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방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구의 재산상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2조의4(겸직허가) ①근로자가 제12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한다. 단, 환경공무직은 사용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근로자가 재직·경력증명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공무직은 인사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환경공무직은 사용부서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1주 40시간으로 한다”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0조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제21조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육아”를 “유아”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자녀(휴직신청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59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

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울산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안전보건교육) 사용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산업재해 보고 등) ①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였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업재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관련법규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개정 반영하여 공무원·기간제 근로자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채용·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채용 시 시험전형 방식 명시(제5조)

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규정 개정(제6조)

- 채용 공고기간 수정 : 3일 이상 → 7일 이상

- 신체조건 확인 필요시, 채용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다. 청렴의무 조항 신설(제12조의2)

라. 영리업무의 겸직제한 및 겸직허가 사항 신설(제12조의3~4)

마.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사유 추가(제42조)

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규정 신설(제10장)

사. 그 외, 관련 법규 및 현행사항 반영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3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송내14길 22	화봉동 425-5	2023. 2. 16.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245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비율 상향조정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 (당초) 주관부서 → (변경) 총괄부서
- 나. 정보공개심의회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위촉직 위원 비율 상향 조정(안 제4조제2항)
 - (당초) 2분의 1 → (변경) 3분의 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9조)

3.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2)241-7205, 팩스번호 : 052)241-720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범시행령”을 “같은 범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관부서 등 지정)”을 “(총괄부서 등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청구서의 사무 내용이 2개 이상의 담당부서일 경우,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정에 따른다.

제4조제2항은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사유발생일부터”를 “사유 발생일부터”로 하고, “주관부서”를

“총괄부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u>같은 법 시행령</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u> ----- ----- -----.
제2조(주관부서 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	제2조(<u>총괄부서 등 지정</u>) ① -----

복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담당관·과 및 소·관·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구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 없이 협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

② -----

----- 과 -----

----- 구조례 -----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① 총괄부서

-----.

② 청구서의 사무 내용이 2개 이상의 담당부서일 경우,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정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로 한다.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서기) ①·② (생략)

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5조(심의요청) -----

----- 사유 발생일부터
----- 총괄부서-----
-----.

제6조(심의회 운영) ① -----
----- 총괄-----

-----.

② -- 부득이한 사유로 -----

-----.

제8조(간사, 서기) ①·② (현행과 같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음)

③ -----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는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26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개요

가. 신청자 : (주)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코리아

나. 목적 : 울산 해울이(1,2,3)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내역

신청자		장 소	면 적 (㎡)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 간	비 고
성 명	주 소						
(주)코펜하겐 오프쇼어파 트너스코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5-1 동측 2.0km~13.0km 전면해상	13,680.0 1	울산 해울이 해상풍력(1,2,3)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	-	허가일로 부터 6개월	

2. 의견제출

가.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나. 제출기한 : 2023. 2. 17.(금) ~ 2022. 3. 8.(수)까지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농수산과(연암동), FAX : 052-241-8059)

3.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265호

신청자		장 소	면 적 (㎡)	목 적	설치하는 공 작 물	기 간	비 고
성 명	주 소						
(주)코펜하겐 오프쇼어파 트너스코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센트로폴리스 A동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5-1 동측 2.0km~13.0km 전면해상	13,680.0 1	울산 해일이 해상풍력(1,2,3)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	-	허가일로 부터 6개월	

○ 의견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기타 증빙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272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구민대상 시상 시기를 격년제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을 강화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상 시기 변경 (안 제2조제2항)
- 나.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신설 (안 제4조의2)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63,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구민대상 시상 시기를 격년제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을 강화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상 시기 변경 (안 제2조제2항)
- 나.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신설 (안 제4조의2)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2월중
- 바. 입법예고 : 2023. 2. 16. ~ 3. 8.(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연 1회”를 “2년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추진된 공적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상 추천 제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생 략)</p> <p>② 수상인원은 <u>연 1회</u>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않는다.</p>	<p>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 <u>2년마다</u> ----- ----- -----</p>
<p>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p> <p>1. ~ 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p> <p>①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p> <p>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p> <p>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추진된 공적(행사, 후원, 봉사활동 등)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